

□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

-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권 확보, 안전영향평가 지표개발 제시 등 연구의 독창성이 돋보임

□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

- 독창적인 대안을 제시*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법 개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

* 「재난안전법」 → (가칭)국민안전기본법 + (가칭)재난관리기본법으로 분법

- 향후 법 개정 시에는 본 연구를 토대로 세부 조항에 대한 검토와 다른 법률 간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 보장 필요

- 특히, 사고 발생 시 국민과 국가의 책임범위에 대한 면밀한 연구 요망

□ 기타사항

- 분법의 필요성으로 안전권 신설에 따른 '안전서비스 강화'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

- 아울러 '재난 대응과정의 문제'를 분법의 논리로 활용하는 것은 무리

- '안전관리'와 '재난관리' 분야에 각각의 '기본법제'를 형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 것인지 추가검토 필요

- 예를 들어, '기본법'적 요소는 「(가칭)국민안전기본법」에 담고, '재난관리' 분야는 '개별법' 성격의 「(가칭)재난관리법」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 및 비교검토 필요

평가자 확 인	구 분	평가위원		과제담당관
	성 명	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류현숙		안전기획과 과장 정윤한
평 가 보고회	개최일자	2018. 10. 12.(금)	장 소	SM타워 401-2호
	참석자	(내부) 안전관리정책관, 안전기획과장, 안전개선과장, 박정호 서기관, 박승주·김지민·이일령·전경수 사무관, 최우정 연구관, 여은태 연구원 (외부) 한국행정연구원 류현숙 위원,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박사		